

변리사스쿨 9월 전국모의고사 정오표

과목	번호	구분	정정 전	정정 후
민법개론	23	보기	① ① ② ③ ④	① ② ③ ④ ⑤
산업재산권법	25	정답	②	④
	29		③	③ , ④ (복수정답)

산업재산권법 이의신청 내용

[12번] Q. 9월 모의고사 12번 3번 지문은 "침해제품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도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균등침해 하는 것으로 성립될 수 있다" 라고 하고 있으며, 이 지문은 생략을 하는 경우에는 간접침해가 아닌 이상 비침해라고 해서 옳지 않은 지문으로 출제 되었습니다.

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"구성이 특허발명의 과제 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데, 그 구성을 생략한 기술에서도 발명의 과제해결 원리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므로, 그 구성의 생략에 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 구성의 생략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균등한 구성으로 봄이 논리적이다"(2015라20318)라고 판시하였습니다.

따라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일부 구성요소를 생략한 경우에도 균등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옳은 지문이라고 생각됩니다.

답변)

1차 객관식은 대법원 판례를 옳은 지문으로 선택하여야 합니다. 생략발명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접침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. 문의주신 2015라20318 은 하급심 판결로서 실질적 구속력이 없습니다. 이를 근거로 1차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됩니다. 다른 쟁점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1차 시험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답을 찾으셔야만 합니다.^^